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훈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72
----------	------

발의연월일 : 2016. 12. 19.

발의자 : 조훈현 · 정병국 · 원유철

김석기 · 이명수 · 이종배

송희경 · 정갑윤 · 신보라

金成泰 · 김성원 · 김성찬

김도읍 · 이진복 · 권성동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지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교육부는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출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함.

이에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하고, 국가가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운영 및 경비지급”을 “운영”으로 한다.

-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① ~ ③ (생략) <u>&lt;신설&gt;</u></p> <p>④ 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운영 및 경비지급, 제2항제7호에 따른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p> <p>⑤ -----운영----- ----- ----- ----- -----. -----.</p>